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(보고)서

1. 양도인

상호 또는 성명			(인)	사업자(-	주민등록)번호			
소 재 지(주 소)								
투 자 자 규 모	□ 대기업 □ 중소기업 □ 개인사업자 □ 개인							
2. 양수인								
상호 또는 성명			(인)	대 표	표 자 명			
사업자(주민듕록)번호				법 인	! 등 록 번 호			
담당자 및 연락처	(Tel.)							
소 재 지(주 소)								
지정거래외국환은행	<u>e</u> †						지점	
투 자 자 규 모	□ 대기업 □ 중소기업 □ 개인사업자 □ 개인							
3. 양수도 현지법인 현황								
법 인 명				설 립	등 기 일			
소재지(주 소)								
신 고 일 자				신 -	고 번 호			
투 자 내 역	□ 투자금액: □ 투자비율: %							
- 4. 양수도 내역 (□ 전액양수도 □ 부분양수도)								
투자지분 양도내역	□ 투자금액:				□ 투자비율: %			
양 수 도 일 자				양 수	도 가 액			
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(보고)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
외국환은행의 장 귀하								
					신고번	<u> </u>		
					신고일기	다		
					신고기	관 :	(인)	

【첨부서류】

- 가. 양수도계약서
- 나.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
- 다. 양수인의 납세증명서, 신용정보조회표(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)
- 라.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(개인에 한함)





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 관련 유의사항

- 1. 양수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동 신고(보고)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(보고서)(별지 제9-1호서식)을 제출하여야 함
- 2.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(보고) 후 양도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당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으로 이관해야 함(부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본 송부)
- 3. 양수인은 자신의 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고 적정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
- 4. 비거주자에의 전액지분 매각은 규정 제9-6조(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)에 따름
- 5. 양수도 당사자가 해외직접투자 양수도에 따른 신고(보고)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
※ 주요항목 기재 요령

-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: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 건이 다수인 경우 최초의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기재
- 투자지분 양도내역: 계약서상 표시된 양도금액과 지분율을 정확히 기재
- 양수도내역: 계약서상의 실제 양수도일자(잔금일자/대금결제일자) 및 양수도가액 기재



